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단38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최영식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조성진, 권기준, 권혜진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34,9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거래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7374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9.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9. 10. 22.까지 6천만 원을, 2019. 12. 10.까지 7천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1회라도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억 6,300만 원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으며,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2019. 10. 22. 원고로부터 6천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금형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금형의 하자 및 불량품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라 1회분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피고의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원고의 금형 총 153벌 중 2019. 10. 4. 22벌, 2019. 10. 22. 1벌, 2019. 11. 12. 61벌, 2019. 11. 19. 61벌 합계 145벌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6. 피고에게 미반환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며 금형 미반환시 2차 변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게, 이미 원고의 요청에 따라 145벌의 금형을 반환하였고, 위 통지 이전엔 미반환 금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재추적 결과 3벌의 미반환 금형을 확인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10일 이내에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른 2차 변제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2차 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2. 14.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른 2차 변제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2020. 3.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금제683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잔존채무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35,234,958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13. 피고로부터

3벌의 미반환 금형을 인수하였고, 더 이상 반환받을 원고 소유 금형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라 1차 변제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의 금형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차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정지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 35,234,958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조정조서상 피고의 금형 반환 의무는 피고의 1차 변제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고, 2차 변제금 지급의무와도 선결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차 변제금 지급기일 이전에 4회에 걸쳐 대부분의 금형을 반환했으므로, 원고는 2차 변제금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정조서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의 금형 반환 채무는 원고의 분할변제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1차 변제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의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9. 10. 4. 1차 변제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은 당일부터 2019. 11. 19.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총 금형 153벌 중 145벌을 반환하였고, 2020. 5. 3. 마지막으로 미반환 금형 3벌을 추가 반환하였는바, 2차 변제금 지급일인 2019. 12. 10.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금형을 반환하였던 점, ③ 따라서 대부분의 금형이 반환된 상황에서,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관계에 있지도 않은 금형 미반환을 이유로 원고가 2차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10. 2차 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후단에 따라 증액된 원금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증액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을 피고가 출급하여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변제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민정